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 7차 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내대리인 지정, 동의의결제도 도입〉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3012호)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황 승 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	2
2. 동의를결제도 도입	12

I.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부
- (2) 제 안 일 : 2024. 8. 20.
- (3) 회 부 일 : 2024. 8.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은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도입된 ‘동의의결제’를 이 법에도 도입하여 일반적인 시정조치로는 불가능한 다양한 내용의 시정방안을 사업자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합의를 통해 채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

□ 개정안은 국내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일정 기준 이상의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며 국내대리인 지정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를 명하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신설>	제20조의4(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u>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이하 “통신판매업자등”이라 한다)로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u> 1. <u>통신판매업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u> 가. <u>제13조제5항에 따른 거래 조건(같은 조 제2항제8호</u>

현행	개정안
	<u>의 사항에 관한 거래조건으로 한정한다)의 이행</u> <u>나.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처분의 이행</u> <u>2.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u> <u>가. 제20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u> <u>나. 제1호나목의 사항</u> <u>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통신판매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u> <u>1.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통신판매업자등이 설립한 국내 법인</u> <u>2.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통신판매업자등이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u>

현행	개정안
	<u>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u>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후 통신판매업자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u> <u>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u> <u>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u> <u>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u> <u>⑤ 국내대리인은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과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u> <u>⑥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 기준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u>

현행	개정안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u>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u>
1.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u>제20조의3</u> ,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u>제32조의2제2항</u> 을 위반하는 행위	⑦ <u>제3항에 따른 지정 사항의 제출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2. (생략)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 ----- ----- ----- ----- -----.
② ~ ④ (생략)	1. ----- ----- ----- ----- ----- ----- ----- <u>제20조의3, 제20조의4</u> ----- ----- ----- ----- <u>제32조의4제2항</u> -----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3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②(생략)	제3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②(현행과 같음)
③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제38조에 따라 위임된 시·도지사의 처분에 대한이의신청, <u>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u> , 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및 <u>제99조</u> 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 ----- ----- ----- <u>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문서의 송달</u> ----- ----- ----- <u>제98조</u> ----- ----- -.
④·⑤(생략)	④·⑤(현행과 같음)
제45조(과태료) ① <u>제32조의2제1항</u> 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5조(과태료) ① <u>제32조의4제1항</u> ----- ----- -----.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u><신설></u>	<u>1의2. 제2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u>

현행	개정안
<u><신설></u> <u><신설></u> 2. ~ 6. (생략) 7.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따 르지 아니한 자 ④ ~ ⑧ (생략)	<u>자</u> <u>1의3. 제20조의4제3항을 위반하 여 지정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 한 자</u> <u>1의4. 제20조의4제6항을 위반하 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 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u> 2. ~ 6. (현행과 같음) 7. 제32조의4제2항----- ----- ----- ④ ~ ⑧ (현행과 같음)

□ 통계청의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소매판매액에서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온라인을 통
한 해외 직접 구매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임.

<소매판매액 중 온라인쇼핑 거래액 비중>

(경상금액, 억원, %)

구분	소매판매액(A)	온라인쇼핑 거래액	온라인쇼핑 상품 거래액(B) ¹⁾	비중(B/A)
2021년	5,923,782	1,902,231	1,454,955	24.6
2022년	6,255,518	2,111,236	1,552,633	24.8
2023년	6,397,192	2,288,607	1,627,028	25.4

1) 「여행 및 교통서비스, 문화 및 레저서비스, 이쿠폰서비스, 음식서비스, 기타서비스 거래액」 제외
(자료: 통계청 2024년 6월 온라인쇼핑동향(2024년 2/4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및 구매 통계 포함))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2021년	5,257,402	1,193,768	1,223,034	1,248,833	1,591,767
2022년	5,945,356	1,433,886	1,477,039	1,446,370	1,588,061
2023년	6,681,913	1,506,454	1,603,867	1,607,873	1,963,719

(자료: 통계청 2024년 6월 온라인쇼핑동향(2024년 2/4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및 구매 통계 포함) 재구성)

- 해외직구의 증가 추세와 함께 소비자 상담·분쟁 및 관련 피해사
례도 증가하고 있으나¹⁾, 국내에 주소지·영업지가 없는 해외 사
업자의 경우 소비자 보호 방안이 미흡한 실정임.

<최근 3년간 국제소비자상담 접수 추이>

(단위: 건)

2021년	2022년	2023년
14,086	16,608	19,418

(자료: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 이에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지가 없는 일정 기준 이상
의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소비자 불만 및 분쟁
처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등의 업무를 대리하는 국내대
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임.

1)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전년 대비 16.9% 증가(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2024. 3. 29.)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해외 물품구매 및 서비스거래 경험이 있는 소비자(1,000명)을 대상으로 국제거래 이용 및 피해 경험을 설문조사한 결과, 해외직구 이용자의 10%, 해외 숙박·항공 이용자의 22% 이상이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함(국제거래, 물품구매보다 서비스거래에서 피해경험 많아,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2023. 8. 31.)

＜국내대리인 관련 법령 조항 및 의무 사항＞

구분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자
소비자 불만 및 분쟁 처리	§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2항 제8호 및 동조 제5항 ▶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 재화등에 대한 불만처리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	§ 전자상거래법 제20조제3항 ▶ 사이버몰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원인 및 피해의 파악 등 필요한 조치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5조의2 ▶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이나 불만을 접수·처리하는 인력·설비 보유 ▶ 통신판매중개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의하여 발생한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 마련 및 고지 ▶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원인 등에 대한 조사 및 진행경과·처리방안 등 소비자에게 고지
조사 협조	§ 공정거래법 제81조제1항제3호 ▶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및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개정안의 내용은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소비자 피해 등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피해 구제 및 원활한 조사 등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²⁾.
- 참고로, 국내대리인 관련 규정은 2018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로, 「개인 정보 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되어 있

2) 다만,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개정안이 국내대리인에게 단순한 절차적 의무를 넘어 통신판매자나 통신판매중개자로서의 실질적인 의무 이행을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실질적인 영업조직을 설치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므로 과도하다는 입장이며, 한미FTA의 현지 주재 의무 금지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인 지정이 새로운 사무소 등의 설립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반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제12.5조 현지주재

어떠한 당사국도, 국경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 영역에서 대표사무소 또는 어떠한 형태의 기업을 설립 또는 유지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주자이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없다.

으며, 2025년 10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도 시행될 예정임.

<국내대리인 관련 타 입법례>

구분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전기통신 사업법	전파법	게임산업법
대상	국내에 주소· 영업소가 없 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자 등	국내에 주소· 영업소가 없 는 개인정보 처리자	국내에 주소· 영업소가 없 는 부가통신 사업자	국내에 주소· 영업소가 없 는 자가 적합 성평가를 받 고자 하는 경 우	국내에 주소· 영업장이 없 는 게임배급 업 또는 게임 제공업을 영 위하는 자
대리업무	① 과기부 또는 방통위에 서 요구하는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②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③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요구하는 물품· 서류 등 자료의 제출	① 이용자 요구 사항 처리를 위한 국내 연락 수단의 확보 ② 과기부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 ③ 이용자 보호 업무 ④ 방통위의 자료제출명령의 이행	① 적합성평 가의 신청 및 변경신청과 자기적합확인 공개에 관한 사항 ② 과기부가 요구하는 관련 자료 또는 해당 기자재의 제출	① 문체부 등의 보고의 이행 ② 게임물 표시 의무의 이행
미지정시 제제수단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국내대리인을 허위로 지정한 경우 적합성평가 취소 등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준용 규정이 개정되었는데³⁾, 개정안의 내용은 개정된 현행법 내용이 아닌 개정 전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현행법 내용

3) 2024년 8월 7일 시행

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동의를결제도 도입

-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등에 도입되어 있는 동의를결제도를 도입하고, 동의를결제도의 실효성 담보를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신설>	제32조의2(동의를결) ① <u>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상태의 자발적 해소 등 거래질서의 개선, 소비자 피해 구제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를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의를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를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u> ② <u>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u>

현행	개정안
	<u>한다.</u> 1. <u>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u> 2. <u>해당 행위의 중지, 소비자 권익 침해상태의 해소 등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u> 3. <u>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u> ③ <u>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이 조에서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이 조 및 제32조의3에서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u> 1. <u>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u>

현행	개정안
	<u>2.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를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u> <u>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를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u> <u>⑤ 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0조제2항제3호 중 “제89조제3항”은 “이 법 제32조의2제3항”으로, 같은 법 제90조제3항 단서 중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제40조, 제42조 및 제43조”로, 같은 법 제90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80조제4항 및 제5항”은 “이 법 제26조제5항”으로, “제89조제1항”은 “이 법 제32조의2제1항”으로, 같은 법 제91조제2항 전단 중 “제89조제1항”은 “이 법 제32조의2제1항”으로, 같</u>

현행	개정안
<신설> 제32조의2(임시중지명령)(생략)	은 법 제91조제2항 후단 중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으로, 같은 법 제91조제3항 중 “제89조제3항”은 “이 법 제32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32조의3(이행강제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2조의4(임시중지명령) (현행 제32조의2와 같음)

- 사업자의 기만행위 등으로 다수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시정조치, 과징금)와는 별개로 일반 소비자들이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쳐야 함.

○ 그러나 개인별 피해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고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그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이 커서 별도의 소송 제기를 통하여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 상태의 자발적 해소, 거래질서의 개선 및 소비자 피해 구제 등을 위한 시정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시정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위의 위법성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통해 사건을 종결시키는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임⁴⁾.

□ 동의의결제도는 미국의 당사자주의적 분쟁해결시스템(Adversarial Dispute Resolution System)의 산물로서 경쟁법 집행과정에서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단계에 이르기 전에 피심인과 경쟁당국과의 합의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일련의 절차임.

○ 우리나라에서는 한·미 FTA 합의사항⁵⁾에 동의명령제도의 도입이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도입되어 있는 동의의결제도와 그 내용, 요건 등이 유사함.

5) (한미 FTA 협정문 제16.1.5)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가 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자국의 당국에게 그 집행 조치의 대상자와 상호합의에 의하여 자신의 행정적 또는 민사적 집행조치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한다.

5. Each Party shall provide its authorities responsible for the enforcement of its national competition laws with the authority to resolve an administrative or civil enforcement action by mutual agreement with the subject of such an enforcement action.

포함됨에 따라 2011년 12월 공정거래법에 처음 도입된 이래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4. 시행),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2. 6. 시행),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2. 7. 시행)에 확대 도입되었음.

□ 동의를결제도는 신속한 사건 해결을 통해 소비자 등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고, 시장 상황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적시에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특히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은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다수의 소비자에게 동시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소송을 통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비용과 시간의 과다 소요가 우려되며, 피해금액이 소액인 경우 개별 소비자가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의 실질적 권리 구제 및 피해 상황의 신속한 해소를 위하여 동의를결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 다만, 2011년 동의를결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동의를결 신청건수는 총 28건(인용 13건, 기각 11건, 진행 중 4건)에 불과하다는 점에서⁶⁾ 동 제도의 활성화·내실화 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동의의결제도 운영 현황>

신청일	사업자	내용	의결일 (기각 결정일)	처리 결과	적용법률
13-11-20	네이버(주)	네이버(주)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 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 에 대한 건	14-05-08	인용	공정거래법
13-11-20	네이버비즈니스 플랫폼(주)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주)의 시장 지배적지위남용 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에 대한 건	14-05-08	인용	공정거래법
13-11-21	(주)다음 커뮤니케이션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에 대한 건	14-05-08	인용	공정거래법
13-11-06	에스에이피 코리아(주)	에스에이피코리아(주)의 거래상지 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 의결에 대한 건	14-12-04	인용	공정거래법
14-11-21	롯데쇼핑(주) (롯데시네마)	롯데쇼핑(주)의 시장 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 결 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건	14-12-02	개시 신청 기각	공정거래법
14-11-21	씨제이 씨지브이(주), 씨제이 이엔엠(주)	씨제이씨지브이(주)와 씨제이이엔 엠(주)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씨제이씨지브 이(주)와 씨제이이엔엠(주)의 동의 의결 개시신청에 대한 건	14-12-02	개시 신청 기각	공정거래법
14-08-27	마이크로소 프트 코포레 이션	마이크로소프트 코포레이션(MS) 및 노키아 코포레이션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 련 MS의 동의의결에 대한 건	15-08-24	인용	공정거래법
15-10-20	에스케이 텔레콤(주)	에스케이텔레콤(주)의 부당한 광 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 에 대한 건	16-09-29	인용	표시광고법
15-10-29	(주)케이티	(주)케이티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에 대한 건	16-09-29	인용	표시광고법
15-10-27	(주)엘지유플 러스	(주)엘지유플러스의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에 대한 건	16-09-29	인용	표시광고법
16-11-18	퀄컴 인코포 레이티드 외 2개사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장지 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 한 건	16-12-15	개시 신청 기각	공정거래법

6)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사례 없음

신청일	사업자	내용	의결일 (기각 결정일)	처리 결과	적용법률
17-05-24	현대모비스(주)	현대모비스(주)의 거래상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절 차 개시신청에 대한 건	17-11-27	개시 신청 기각	공정거래법
18-04-24	(주)엘에스 외 3개사	엘에스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 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 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건	18-07-02	개시 신청 기각	공정거래법
18-08-13	(주)골프존	(주)골프존의 차별적 취급행위 등 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 시신청에 대한 건	18-09-18	개시 신청 기각	공정거래법
19-03-16	(주)엠티알	(주)엠티알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건	19-09-02	개시 신청 기각	표시광고법
19-02-28	남양유업(주)	남양유업(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 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에 대 한 건	20-05-28	인용	공정거래법
19-06-04	애플코리아(유)	애플코리아(유)의 거래상지위 남 용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 결에 대한 건	21-03-16	인용	공정거래법
21-05-12	삼 성 전 자 (주) 외 4개사	기업집단 「삼성」 소속 계열회사 들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관 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건	21-06-04	개시 신청 기각	공정거래법
22-04-08	(주)스타필드 하남	(주)스타필드하남의 거래상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에 대한 건	22-11-24	인용	공정거래법
22-07-13	브로드컴 인 코 포 레 이 티 드 외 3개사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거 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 련 동의의결에 대한 건	23-06-30	기각	공정거래법
22-09-29	(주)한솔	(주)한솔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 시신청에 대한 건	24-06-07	인용	가맹사업법
22-10-13	(주)유진종합 건설	(주)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 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 에 대한 건	24-03-29	인용	하도급법
23-10-19	(주)카카오모 빌리티	(주)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건	23-12-22	개시 신청 기각	공정거래법
24-05-30	(주)지에스리 테일	(주)지에스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 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 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건	진행 중	진행 중	대규모유통 업법
24-05-30	(주)비지프 리테일	(주)비지프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 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 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건	진행 중	진행 중	대규모유통 업법

신청일	사업자	내용	의결일 (기각 결정일)	처리 결과	적용법률
24-05-30	(주)코리아세븐	(주)코리아세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건	진행 중	진행 중	대규모유통업법
24-05-30	(주)이마트24	(주)이마트24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건	진행 중	진행 중	대규모유통업법
24-04-29	(주)리만코리아	(주)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건	24-10-21	개시 신청 기각	방문판매법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한편, 안 제33조의3에서는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동 조항은 동의의결의 이행력 담보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주요국가에서 동의의결 미 이행 시 도입하고 있는 제재수단은 아래 표와 같음.

<해외 주요국의 동의의결 제도 및 미이행시 제재수단>

국가	도입여부	근거	미이행시 제재수단
미국	○	연방행정절차법	1일당 \$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사벌금(Civil penalty) 부과
일본	○	독점규제법 제65조	형벌(시정조치 불이행과 동일)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 벌금
EU	○	Council Regulation 9조	1일당 전년도 1일 평균매출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서위반벌금 부과
한국	○	공정거래법 제51조의4	동의의결 미이행시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자료: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 21-12 전자상거래 소비자법제 분석 연구, p.264)

문 의 처

02)6788-5114
